

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개정 2019.05.10. 개정 2022.02.18. 개정 2022.03.17. 개정 2022.04.04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과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 이라 한다)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05.10>

제2조 (기능)

대학교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·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05.10>

제3조 (사업)

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
2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
3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 기관의 행·재정 지원
4.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,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,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관리
5. 대학교 교외 연구비 지급 및 관리<개정 2019.05.10>
6. <삭제 2022.02.18>
7.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 지원
8. 기타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

제2장 조 직

제4조 (단장 등)

-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(이하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이상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단, 총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직무대행자를 임명 할 수 있다.) <개정 2019.05.10>
- ② 삭제< 2019.05.10>

제5조 (감사)

- ① 산학협력단의 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의 자격은 대학교직원 또는 감사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.
-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.
- ③ 삭제< 2019.05.10>

제6조 (하부조직)

- ① 산학협력단에는 사업관리팀과 P-TECH공동훈련센터, 치유센터를 둔다. 다만 P-TECH공동훈련센터, 치유센터의 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19.05.10. 2022.02.18, 2022.03.17.>
- ② 팀에는 팀장을 두며, 일반·기술직 6급이상으로 보한다. <본조신설 2019.05.10><개정 2022.04.04.>
- ③ 산학협력단에는 학교기업을 두며 각각의 운영자는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.<개정 2019.05.10>
- ④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

제7조 (사업관리팀) <개정 2022.02.18>

- ① 사업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19.05.10. 2022.02.18>
 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관리<개정 2019.05.10>
 2. 정부부처 및 기타 수탁과제 연구지원 관련업무
 3.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수립
 4. 국책 및 국가R&D사업 기획·조정·유치에 관한업무<본조신설 2019.05.10>
 5. 산학협력 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·훈련<본조신설 2019.05.10>
 6. 운영위원회 운영<본조신설 2019.05.10>
 7. 산학협력 관련 정보수집·제공 및 홍보<본조신설 2019.05.10>
 8.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<본조신설 2019.05.10.>
 9.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회계관리<제③항 1호를 제9호로 옮김. 2022.02.18>
 10. 예·결산 관리<제③항 2호를 제10호로 옮김. 2022.02.18>
 11. 대학교 교외 연구비 지원·관리<개정 2019.05.10><제③항 3호를 제11호로 옮김. 2022.02.18>
 12. 산학협력단의 실적·성과의 평가<제③항 4호를 제12호로 옮김. 2022.02.18>
 13. 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<개정 2019.05.10><제③항 5호를 제13호로 옮김. 2022.02.18>
 14. 각종 통계관련업무<제③항 6호를 제14호로 옮김. 2022.02.18>
- ② <삭제 2019.05.10>
- ③ <삭제 2022.02.18>

제8조 <삭제 2019.05.10>

- ① <삭제 2019.05.10>

- ② <삭제 2019.05.10>
- ③ <삭제 2019.05.10>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9조 (구성)

-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교무처장, 기획처장을 포함하여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개정 2019.05.10. 2022.02.18>
-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운영위원회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9.05.10.>

제10조 (심의사항)
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 2.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 3. 산학협력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4.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·평가 및 사업결과에 관한 사항
 5. 교외연구비, 연구간접경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6. 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11조 (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)

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4장 산학협력협의회 삭제 < 2019.05.10.>

제12조 <삭제 2019.05.10.>

- ① <삭제 2019.05.10>
- ② <삭제 2019.05.10>
- ③ <삭제 2019.05.10>
- ④ <삭제 2019.05.10>
- ⑤ <삭제 2019.05.10>

제13조 <삭제 2019.05.10.>

1. <삭제 2019.05.10>
2. <삭제 2019.05.10>
3. <삭제 2019.05.10>
4. <삭제 2019.05.10>

제14조 <삭제 2019.05.10>

제5장 회 계

제15조 (수입)

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<개정 2019.05.10>
3.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<개정 2019.05.10>
4.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5.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<개정 2019.05.10>
6. <삭제 2019.05.10>
7.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당해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
8.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및 이자수입

제16조 (보상금의 지급)

- ① 전(前)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, 수입금액의 정도,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하며,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

제17조 (지출)

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의 관리·운영비
2.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3. 본교의 시설·운영 지원비
4. 산학협력단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
5. 학교기업의 운영비<개정 2019.05.10>
6. <삭제 2019.05.10.>

7. <삭제 2019.05.10>
8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9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10. 기타 산학협력단 업무와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

제18조 (회계관리)

-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
제19조 (회계기관)

-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
- ②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. 다만,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- ④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.

제20조 (지출방법)

-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전(前)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.
-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,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추진비, 여비 기타 비목별로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.

제21조 (회계처리 등)

- 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한다.
-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상태표,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.<개정 2019.05.10>
-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는 법에 의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(교육부장관 고시)을 적용하여 시행한다. <개정 2019.05.10>
- ④ 이 규정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2조 (예·결산)

- ① 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예산안을 확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

정 2019.05.10>

- ③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5.10>
 - 1. 재무상태표 및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<개정 2019.05.10>
 - 2.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
 - 3. 현금흐름표<개정 2019.05.10>
 - 4. 부속서류
- ④ 총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결산을 심의·확정하여야 한다.
- ⑤ 단장은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5.10.>

제23조 (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)

- ① 단장은 전(前)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2.18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17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